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문개정	1999.	1.	7	조례	제1114호
개정	1999.	6.	29	조례	제1139호
	1999.	9.	10	조례	제1147호
	2001.	7.	26	조례	제1255호
	2002.	2.	16	조례	제1272호
	2003.	2.	11	조례	제1297호
	2003.	10.	9	조례	제1316호(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
전문개정	2003.	11.	18	조례	제1323호
개정	2004.	1.	8	조례	제1332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2004.	6.	25	조례	제1344호
	2004.	9.	21	조례	제1358호(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
	2004.	11.	20	조례	제1359호
	2005.	4.	21	조례	제1379호
	2005.	7.	27	조례	제1396호
	2005.	12.	22	조례	제1420호
	2006.	10.	20	조례	제1463호
	2006.	12.	15	조례	제1480호
전문개정	2007.	3.	28	조례	제1500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6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8.	9.	24	조례	제1608호
	2008.	12.	9	조례	제1630호
	2009.	5.	29	조례	제1665호
전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일부개정	2011.	3.	8	조례	제1759호
일부개정	2011.	9.	22	조례	제1798호
일부개정	2011.	12.	26	조례	제1815호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862호
일부개정	2013.	2.	25	조례	제1907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3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974호
일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1978호
일부개정	2014.	2.	27	조례	제1992호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	제2005호
일부개정	2015.	4.	3	조례	제2074호
일부개정	2015.	5.	28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13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55호
일부개정	2016.	3.	2	조례	제2164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3호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2221호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1호
일부개정	2017.	7.	24	조례	제2270호
일부개정	2017.	11.	10	조례	제2310호
일부개정	2018.	1.	31	조례	제2336호
일부개정	2018.	4.	25	조례	제2361호
전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10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 본청 · 소속 · 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직속기관: 보건소
2. 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3. 하부 행정기관: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제3조(실 · 국장 및 담당관 · 과장의 직급 등)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 · 국장 및 담당관 · 과장, 직속기관 · 사업소 · 하부 행정기관의 과 · 소 ·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의 담당관 ·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① 시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서 관할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본청

제5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아래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시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12. 20>

④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1. 시정 홍보 및 방송·언론매체·공보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본청·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공무원의 비위 예방, 조사 처리 및 시민인권에 관한 사항

제6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을 둔다.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0>

-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8. 2, 2019. 12. 20>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정책개발, 정책과제,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국도비 관리, 법무 및 의회협력, 평가통계에 관한 사항
3. 자치와 분권, 민관협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구축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재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재정국에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 ② 행정재정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1. 복무관리 및 의전, 선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조직, 공무원 교육,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지출 및 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6. 토지관리, 부동산, 공간정보, 새주소사업, 지적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0>

- ② 경제문화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1. 일자리정책 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창업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인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

한 사항

3. 농업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 축산행정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육성·지원, 관광정책, 문화유산 관리,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광명시민체육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12. 20>

제10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0>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복지자원 관리, 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업지원 및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아동복지, 출산정책, 외국인복지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4. 보육정책 및 보육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육정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생정책, 식품안전·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하수과, 지도민원과를 둔다.

- ② 안전건설교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 재난안전, 민방위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3. 도로 확충,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정책, 교통정보 운영, 교통시설 및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
 5. 하수시설, 하수도 정비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가로질서(노점상, 적치물), 주정차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재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재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0, 2020. 3. 25>
② 도시재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관리지역 개발 및 연구 기획, 도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

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도시디자인,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원정책 수립, 공원 조성, 녹지 및 산림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3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생활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0>

제14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에 평생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를 둔다.

② 평생교육사업소에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을 둔다.

③ 환경수도사업소에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를 둔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평생교육사업소

- 가. 교육정책, 친환경무상급식, 학교지원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 나. 평생교육시행 및 총괄·조정, 평생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도서자료 관리 및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대출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수도사업소

- 가.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 대기·수질 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나. 생활폐기물의 수거, 자원순환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공과금 및 제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라. 수돗물 공급 관로의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정수장·배수지·가압장의 보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등록사업소

- 가. 차량등록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차량행정·차량등록·자동차 관리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건설기계, 이륜차의 등록·말소·이전·저당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지원사업소: 건축 및 토목공사 등 시장이 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 행정기관

제19조(설치) 법 제3조제3항,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20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21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관할구역)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86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1. 집행기관의 정원: 1,06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제24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20. 3. 25>

부칙 <2018. 8. 30 제240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시민안전국장, 시민행복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안전과장,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여성가족과장, 주택과장”으로 한다.

②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시민안전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③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시민안전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④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시민안전국장,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제1호 중 “시민안전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⑥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시민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6호 중 “국장 및 사업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 중 “시민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국장·사업단장·소장이 되며”를 “국장·소장이 되며”로 한다.

제25조 제3항 제1호 중 “국장·사업단장·소장 또는 담당 과장”을 “국장·소장 또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⑧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시민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시민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고용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고용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고용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고용경제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광명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고용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재정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⑮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의 “고용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복지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⑰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행복국장, 복지돌봄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돌봄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돌봄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복지돌봄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돌봄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⑳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복지돌봄국장, 시민행복국장,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조정 실장, 경제문화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돌봄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㉒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㉓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㉔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시민행복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㉕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시민행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㉖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행복국장, 자치행정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㉗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시민행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㉘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㉙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민행복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㉚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⑦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미래전략실”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

⑧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철도정책실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251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중 “U-통합관제센터”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하고, 별표 2 명칭란의 “U-통합관제센터”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정책개발담당관”을 “정책기획과”으로 한다.

②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개발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⑤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⑦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⑧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⑨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⑩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⑪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⑬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첨단도시개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⑮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⑯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재난 업무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중 “홍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홍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0. 3. 25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12. 20>

시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제4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시 청	광명시청	광명시 시청로 20
직속기관	광명시 보건소	광명시 오리로 613
사 업 소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광명시 오리로 762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	광명시 범안로 777-21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광명시 오리로 701
	광명시 건설지원사업소	광명시 시청로 20
하 부 행정기관	광명시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복로31번길 10
	광명시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 947
	광명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
	광명시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888번길 26-6
	광명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너부대로35번길 20
	광명시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광명로791번길 6
	광명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도덕로 53
	광명시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사성로 121
	광명시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시청로 94
	광명시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철산로 56
	광명시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도덕공원로 60
	광명시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오리로 747
	광명시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안현로 25
	광명시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금당로 28
	광명시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안현로 54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소하로 25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성채로 52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 서독로104번길 14

[별표 2] <개정 2019. 12. 20>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공공용 청사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소하도서관
	평생학습원
	충현도서관
	옹달샘도서관
	연서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메모리얼파크
	시민회관
	광명시민체육관
	여성비전센터
	노인요양센터
	환경사업장
배수펌프장	광명배수펌프장
	광명제1배수펌프장
	철산배수펌프장
	하안배수펌프장
	소하배수펌프장
배수지	하안배수지
정수장	노온정수장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개정 2019. 12. 2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4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00%	1.1% 이내	6.8% 이내	23.9% 이내	33.5% 이내	24.8% 이내	9.7% 이상	0.2% 이하

2. 연구직 공무원

구 分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	100%

3. 별정직 공무원

구 分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 공통: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개정 2019. 12. 20>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86			1,086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81			1,081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72	34	2	5	13	18
6급 이하	997			997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지도직 계	1			1		
지도사	1			1		

[별표 6] 삭제 <2020. 3. 25>